2023학년도

북일고 야구부 운영계획서

2023. 1.

북일고등학교

목 차

1. 학교체육진흥법 ····· 1

2. 야구부 운영 ····· 2,3

3. 훈련 및 대회 참가 계획 ····· 3,4

4. 세부 훈련 계획 ····· 5,6

5. 전지훈련 계획 ····· 6

6. 학생 선수 선발 규정과 운동부 출전 규정 ····· 6,7

7.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학생선수보호위원회 기능 포함) ····· 7,8

8. 학생 선수 상담 계획 ····· 9

9. 학교 운동부 운영 시 필수 의무사항 ····· 9

10. 학생 선수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 10

11. 2023학년도 야구부 예산내역 ····· 11

12. 별첨 ····· 12~20

1.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 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선수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야구부 운영

가. 선수 현황

구성 / 종목	학년별 현황			계	성 명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지도교사	운동부지도자	
야구	15	13	11	39	노○진	이○군 외 5명	

나. 선수 명단

순	학년	이름	포지션	비고
1	1학년 (15명)	강○우	투수	
2		김○현	투수	
3		김○희	내야수	
4		김○찬	투수	
5		노○민	내야수	
6		박○환	투수	
7		박○혁	내야수	
8		박○현	투수	
9		서○우	투수	
10		성○우	외야수	
11		윤 ○	내야수	
12		이○우	외야수	
13		임○주	포수	
14		장○율	투수	
15		최○성	포수	
16	2학년 (13명)	김○찬	내야수	
17		김○건	내야수	
18		김○현	투수	
19		김○성	투수	
20		김○우	외야수	
21		김○웅	포수	
22		박○우	투수	
23		안○재	투수	
24		이○용	외야수	
25		조○원	내야수	
26		최○성	내야수	
27		최○원	투수	
28		최○성	투수	
29	3학년 (11명)	김○서	내야수	
30		김○운	내야수	
31		양○모	외야수	
32		양○호	내야수	
33		오○헌	투수	
34		이○현	포수	
35		이○욱	투수	
36		임○묵	외야수	
37		최○현	투수	
38		최○석	투수	
39		홍○서	내야수	

다. 목표

1) 기초체력을 향상하고 전문체력과 전문기술 함양
2) 기초체력 훈련을 통하여 근력과 민첩성, 지구력, 조정 능력 습득
3) 야구 경기 방법과 경기 운영 능력 향상
4) 야구 경기의 과학적 연구에 의한 훈련 방법과 기술개발 모색
5) 학생 간의 협동심 함양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습득
6) 전국체육대회 메달 획득 및 전국대회 상위 입상

라. 훈련방침

1) 개개인의 체력과 기능을 파악하여 능력에 맞는 훈련 계획을 수립 지도하여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
2) 선수의 개인차에 따라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목적을 달성
3) 학생의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방법을 모색하여 지도
4)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성을 함양하고 전인 양성에 기여
5)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지도자 휴식권 보장에 노력(운동여건,종목특성,운동강도 등 고려)

3. 훈련 및 대회 참가 계획

가. 상시 훈련 계획

훈련기간	훈 련 시 간	훈련장소	비고
2022.3.02~ 2023.2.28	· 평일 : 오후 16:30 ~ 21:00 중 실시 · 휴무일 : 오전 09:00 ~ 21:00 중 실시	북일고 야구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나. 대회 및 전지훈련 계획

순	대 회 명	기 간	비 고
1	2023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3~4월 예정	
2	2023년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	4~5월 예정	
3	제7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5~6월 예정	
4	2023 고교야구 주말리그(후반기)	6~7월 예정	
5	제76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7월 예정	
6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8월 예정	
7	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9월 예정	
8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10월 예정	
9	동계 전지훈련	겨울방학	

다. 대회 · 훈련 참가 방침

1) 학기 초 야구부 연간운영계획을 작성 후 내부결재
2) 야구부 연간운영계획 중 변경된 훈련 일정이나 방학 중 운영계획, 전지 훈련 계획 등은 따로 내부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대회 참가 시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 후 참가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수업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경기는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수업이 없는 날에 참가하는 것을 권장
5)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횟수 준수 및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국 단위 대회출전 시 학교장이 자필 서명한 대회 참가 확인서를 제출
6)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학생선수의 출결은'출석 인정'으로 처리
7) 방학중 전지훈련의 경우 예비 신입생을 참가시킬 수 없음**(단, 소속 중학교장의 동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8) 대회참가시 충남야구협회(대한야구협회)에 선수등록을 한 학생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

라. 연간훈련계획

구분 / 분기	기초 기술	전문 기술
12월 ~ 2월 (기초훈련기)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런닝 -본 운동(2시간 30분)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30분) -기본기술 연습: 배팅 및 수비기술 등 -체력훈련 및 웨이트 트레이닝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심상 훈련	-런닝 및 유연체조 순발력 및 근력 유연성 및 스피드 훈련 -본 운동(2시간 30분)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30분) -전문기술 연습: 배팅 및 수비기술 -체력훈련 및 웨이트 트레이닝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심상 훈련
3월 ~ 4월 (준비기)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30분) -체력훈련 400M*7회, 100M*5회 -본 운동(2시간30분) -스피드 및 유연성 운동 -기술연습: 배팅 및 수비기술 등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심상 훈련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30분) -체력훈련 800M*5회, 400M*3회 -본 운동(2시간30분) -스피드 및 유연성 운동 -상대를 이용한 근력 운동 -기술연습: 배팅 및 수비기술 등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심상 훈련
5월 ~ 10월 (시합기)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30분) -런닝 2Km, 인터벌 트레이닝 400M*5회, 200M*2회 -본 운동(2시간 30분) -기술연습: 배팅 및 수비기술 등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심상 훈련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30분) -런닝 2Km, 인터벌 트레이닝 400M*5회, 200M*5회 -본 운동(2시간 30분) -기술연습: 배팅 및 수비기술 등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심상 훈련
11월 (전환기)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인터벌 트레이닝 200M*5회 -100M*5회 -본 운동(2시간30분) -준비운동 및 유연성 운동 -기초기술연습 -정리운동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심상 훈련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인터벌 트레이닝 400M*5회 -100M*5회 -본 운동(2시간30분) -준비운동 및 유연성 운동 -전문기술연습 -정리운동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심상 훈련

4. 세부 훈련계획

가. 훈련 개요

구분 \ 유형	일일 훈련	강화훈련	전지훈련	비고
시간	정규수업 후 ~ 22:00	훈련 계획에 따름	훈련 계획에 따름	강화 훈련과 대회 일정에 따라 세부 계획 수립 후 시행
시기	연중	각종 대회 전	하계·동계방학	
장소	교내·외	훈련 계획에 따름	훈련 계획에 따름	

나. 주간 훈련 시간 계획

구분 \ 시간	오전 훈련	오후 훈련	야간 훈련
평시	-	정규수업 후 ~ 19:00	20:00 ~ 22:00
강화 훈련	09:00 ~ 12:30	13:20 ~ 19:00	20:00 ~ 22:00
	대회출전 2주 전 지정 기간 및 하계/동계방학 중		

다. 학년별 훈련 계획

학년	전반기	후반기
1	기본기 훈련 , 캐치볼 , 토스배팅	기술훈련, 체력훈련 , 런닝 어깨강화훈련, 하체강화훈련
2	기본기 훈련 , 연습게임 , 전술훈련	기술훈련, 체력훈련 , 런닝 어깨강화훈련, 하체강화훈련
3	기본기 훈련 , 연습게임 , 전술훈련	기술훈련 체력훈련, 런닝 어깨강화훈련, 하체강화훈련

라. 포지션별 훈련 계획

포지션	오후		야간
투수	스트레칭, 런닝, 체력훈련, 복근운동	기술훈련, 하체훈련, 어깨강화훈련, 전술훈련	튜빙, 쉐도우모션
야수	스트레칭, 런닝, 체력훈련, 토스배팅	기술훈련, 수비기본훈련, 순발력훈련, 전술훈련	스윙, 티배팅, 줄넘기

마. 기타 안전교육 및 예방교육

1) 상시 교육 및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및 운동부 비위 예방
2) 대 상: 선수 및 지도자

3) 세부 교육 계획

	교육 내용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훈련 중 부상 예방 안전교육	●	●	●	●	●	●	●	●	●	●	●	●	
2	훈련 및 대회 이동 간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	●	●	●	●	●	●		●	●	수시
3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			●			●			●	일반학생 예방교육 연계
4	야구장 내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육	●			●			●			●			
5	감염병 예방교육		●			●			●			●		자체 및 일반학생 예방교육 연계
6	도핑 예방교육		●										●	선수등록 시 온라인 연수 및 자원청 연수
7	인권교육			●			●			●			●	자체 및 일반학생 예방교육 연계
8	학교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청렴 교육	●		●							●			학교설명회 연계

5. 전지 훈련 계획

훈 련 명	기 간	장 소
동계 전지훈련	2024년 1,2월 예정	미정

가. 기대효과

1) 다양한 훈련파트너와 새로운 훈련환경 적응을 통한 연습기록과 시합기록의 격차 최소화
2) 실전경험 및 적응력 배양
3) 전국야구대회 대비 경기장 적응훈련을 통한 최상의 컨디션 유지 및 상위 입상

6. 학생선수 선발규정과 운동부 출전 규정

가. 학생선수 선발 시 학연, 지연과 같은 외부요인이 아닌 학생의 의지, 능력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발

나. 학생선수로 선발하기 전 충동적인 운동부 가입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

다. 단체 종목의 경우 고학년 위주의 참가자 명단 구성을 지양하고, 능력위주로 엔트리를 구성

라. 태권도와 복싱과 같이 체급이 나뉘는 종목인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

마. **학교폭력, 흡연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학교 내외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선수 또는 참가자 명단에 불이익**

1) 경징계 사항: 1회-경고, 2회 이후부터 1개 대회출전 불가

2) 중징계 사항: 1회 즉시 1개 대회출전 불가(학교폭력 등)

바. 위 규정 이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사.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초: 5일, 중: 12일, 고: 25일** 가능

- 일·공휴일·방학 제외, 지각·조퇴·결과 합이 3회는 1일로 산정,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 초과가능

7.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학생선수보호위원회 기능 포함)

가. 근거

1)「초·중등교육법」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2) 동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0조의2(소위원회),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학교체육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시 · 도 조례로, 사립학교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나. 기본방향

1)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구성**

다.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담당 부장**으로 한다.

3)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7)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역할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과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 지원**

6)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장려

10) **그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위원회 구성(예시)

구 분	직 책	성 명
위 원 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부 위 원 장	교 감	○○○
위 원	체육건강부장	○○○
	교무기획부장	○○○
	체육교사	○○○
	학부모위원	○○○
	체육 관련 전문가	○○○
간 사	체육교사	○○○

8. 학생 선수 상담 계획

주체별	상담 주기	상담 내용	사후 관리
감 독	상시 학생 훈련과 생활관 학생 요청 또는 개인 관찰에 의해 실시	• 훈련과 생활 간 고충 문제 • 학생 선수 간 불화 • 학생과 지도자 간 인권 침해 건 • 개인과 가정에 관한 제반 문제	• 특이사항 발생 시 교감에게 즉시 보고 조치
지 도 자	**매월 1회 이상** **개인 상담 실시**	• 훈련과 생활 간 고충 문제 • 학생 선수 간 불화 • 학생과 지도자 간 인권 침해 건 • 개인과 가정에 관한 제반 문제	• **매 상담 시 상담 기록.** • 상담 내용 학교장 보고 필요시 선수보호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상 담 교 사	**분기 1회 이상** **개인상담 또는** **집단 상담 실시** **※15인 이상은 학기 1회**	• 훈련과 생활 간 고충 문제 • 학생 선수 간 불화 • 학생과 지도자 간 인권 침해 건 • 개인과 가정에 관한 제반 문제	• 상담교사 배치교: 대면상담 • 상담교사 미배치교: Wee센터 상담사 대면 상담 • **매 상담 시 상담 기록**
기 타 사 항	• 학기별 1회: 축구·야구·하키·배구·핸드볼, 그 외 종목 중 15명 이상 활동부(상담교사) • 한 학기 2번 이상 운동부 내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후 상담을 실시		

※ 상담 실시 후 상담일지(기록) 관리 철저

9. 학교운동부 운영 시 필수 의무사항

가. 학생선수·학부모 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학기별 1회(매 학기초 의무 실시)**

나.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교육(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스포츠분야 인권교육(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도핑방지교육 연 1회 이상**

마. 학교운동부지도자 **재교육 6시간(격년 실시)**

바. 학교운동부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신규: 기본교육, 보수: 3년 주기)**

사. 학부모 부담 경비의 **투명한 회계 관리(학교회계 편입 집행)**

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채용절차를 준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항)

10.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가. e-School 활용

1) 추진 배경

가)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기초학력 향상

나)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2) 운영개요

가) 근 거:「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대 상: 중 · 고등학교 학생선수

다) 기 간: 1학기(3월~7월), 2학기(9월~12월), 방학기간(Run-up)

라) 적 용: e-School 온라인 수업 1시간 수강 시 출석수업 2시간으로 인정 가능

마) 내 용: 수업결손 보충학습,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교차 수강, 진로교육 콘텐츠, 학생선수 상시 보충학습 제공 등

구분	학기 중 (선택 1)		(여름, 겨울) 방학 중
프로그램	대회 출전 시 수업 결손 보충	기본학력신장 (결·보강 병행)	Run-up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바) 학기 중 과정과 방학 중 과정 분리 운영

사) 학기 중 수강학생이 기말 시험에서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Run-up** 과정 추가 이수

아) 학습결과처리 : 학습 확인서 출력 후 학교장 확인

(교무실 > 기초학력 학습관리 > 학습 확인서 출력)

3) 운영방법

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 시 e-School 학습 진행

나) 대회출전 전 결·보강 계획수립 시 e-School 활용 명시

다) 1일 수업결손 시 학습 시간 : 교과 콘텐츠 3회차(3시간)

< (예시) e-School 시스템 수강 >

▷ 1일(6교시) 수업결손 발생 시 e-School 수강 3시간 이수
(병원학교, 사이버학습 동일 적용)

※ (관련근거)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2017. 4. 7.)

구 분		학습 시간대
평일	아침시간	06:00 ~ 09:00
	점심시간	11:30 ~ 13:30
	오후 / 저녁시간	15:00 ~ 02:00
주말 (공휴일)		06:00 ~ 익일 02:00

■ **초등학교는 e-학습터 활용 보충학습 계획 수립 권장**

11. 2023학년도 야구부 예산내역

가. 야구부 운영비

- 총 계 : 754,780,000**원**

구분 / 주관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학교비	지도자 인건비	92,376,200원×5명=	461,881,000
	연습경기운영	600,000원×4회=	2,400,000
	대회운영비	7,750,000원×8회=	62,000,000
	용품구입비	1,055,555원×45명=	47,500,000
	야구부운영비	199,111원×45명=	8,960,000
	전지훈련비	1,544,888원×45명=	69,520,000
	소계		652,261,000
수익자 부담액	지도자 인건비	32,119,000원×1명=	32,119,000
	전지훈련비	1,852,630원×38명=	70,400,000
	소계		102,519,000
계			754,780,000

1-1 학교운동부 운영 절차

구분	세 부 내 용
창단	• **교육공동체(학교,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 **선수·지도자·예산·훈련시설** 등 확보 방안 수립 • **해당지역 초·중·고 연계성 고려** - 연계성이 부족 시 타 시도 학생 위주로 구성되는 문제 (위장전입, 타시도 유출 등)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담당종목 장학사와 창단 관련 협의** - 초·중·고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담당종목 장학사 • **도교육청에서 최종 창단 승인 안내를 받고, 창단 절차 진행**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창단계획서, 연간운영계획서(안) 등) - 창단 승인요청 공문제출(심의자료 첨부) • **도교육청에서 체육특기학교 지정(창단) 승인 공문 발송** - 훈련예산, 학교운동부지도자, 창단지원금 등 지원 (조건부 창단 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음) ※ 창단 이후 **학생선수 확보 노력부족, 운동부 운영 소홀 등**의 이유로 **교육공동체(학교, 교육청 등)**가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 교육공동체와 협의 후 **해체** 절차를 밟을 수 있음. **운동부 해체 시** 지원예산 반납,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공무직(무기직)인 경우 타 학교 동일종목으로 재배치**한다. 동일종목 정원에 공석이 없을 때에는 **직종전환**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다. 예) 전체 학생선수 수가 1~3명으로 대회 참가조차 할 수 없는 종목 또는 전문체육 선수 육성이 아닌 생활체육 수준으로 활동하는 학교운동부 등(단, 지역별, 종목별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예정) • **도교육청에서 체육특기학교(창단) 공문 접수 후 학교운동부 운영**
운영	• 연간운영계획서 수립·추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관리 • 학생선수 선발·관리(최저학력제 운영 등)
관리	• 우수선수 발굴·관리, 학부모회 관리, 학생선수인권 보장[(성)폭력 예방] • 전학과 입학 관리, 수업결손대책(e-School 운영), 도핑방지 예방교육 등
진학	•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관리 • 타 시도 유출 방지(최소화), 초·중·고 연계학교와 교류 활성화 • 대학진학 및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강화

※ **미승인 학교운동부 관리·감독 철저**: 미승인 학교운동부의 경우도 학교장은 충청남도 학교운동부 운영 규정에 준하여 운영해야 함

※ **미승인 학교운동부에는 운동부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으며 운동부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단, 충남대표로 선발될 경우 훈련비와 출전비는 지원함)

1-2 각종 위원회 운영 준수

위원회(운영)	세부 활동내용과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각급 학교 운영)**	○ 학교운동부 구성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 ○ 운동부 연간운영계획서 심의 ○ 후원회 조직과 운영의 활성화와 후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 운동부지도자(코치) 임용 ·해임에 관한 사항 - 채용·복무·징계·해임 등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적용 ○ 운동부 창단·해체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체육특기자 관리사항 협의 등
학교체육소위원회 **(각급 학교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 학생체육활동 장려 (엘리트 + 학교스포츠클럽)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운동부와 체육시설 관리 등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체육특기자 선발과 포기에 관한 사항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체육소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 ○ 구성(7명 내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체육 관련 전문가 등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성·운영)**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 추진 ○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외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소속의 위원회 구성·운영

참고1 **학교체육소위원회 회의록(예시)**

<table>
<tr><th colspan="6">학교체육소위원회 회의록</th></tr>
<tr><td rowspan="4">참석 위원</td><td>위원장</td><td colspan="2">위원 중에서 호선 (인)</td><td>위원</td><td></td></tr>
<tr><td>부위원장</td><td colspan="2">(교감) (인)</td><td>위원</td><td></td></tr>
<tr><td>위원</td><td colspan="2"></td><td>위원</td><td></td></tr>
<tr><td>위원</td><td colspan="2"></td><td>위원</td><td></td></tr>
<tr><td>일 시</td><td colspan="2"></td><td>장 소</td><td></td></tr>
<tr><td rowspan="2">안 건</td><td colspan="4">1. 북일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위원위촉, 정기회의(1차)</td></tr>
<tr><td colspan="4">2.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 의결</td></tr>
<tr><td rowspan="2">의 결</td><td>안건 1</td><td colspan="3">북일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위원 전원 위촉</td></tr>
<tr><td>안건 2</td><td colspan="3">북일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 내용 수정</td></tr>
<tr><td colspan="2">기타 의견수렴</td><td colspan="3">1. 선수고충처리 내용 확인과 학생, 학부모 고지
2. 학생선수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지도자 지속적 교육 요망</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북일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간사 : (인)</td></tr>
</table>

참고2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학부모 상담일지(예시)**

상담자: _____.

날짜	대상(학년/이름)	상담내용과 처리사항	학교장 확인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나이스-체육-학교운동부관리-학생선수관리-학교운동부 상담일지관리(학교)-등록

참고3	야구부 지도자 청렴 서약서

야구부 지도자 청렴 서약서

본인은 지도자로서 북일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야구부 학생 훈련을 위한 일체의 불법 찬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불법 찬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지 않을 것이며, 불법 찬조 금품 및 향응을 강요받을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에 알릴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 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불법 찬조 금품 및 야구부 운영, 야구부 관리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학교 및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1. 7 .

서약자 지도자 : (인)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참고4 | **야구부 학부모 및 학생 청렴 서약서**

야구부 학부모 및 학생 청렴 서약서

본인의 자녀가 북일고등학교 야구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야구부 학생 훈련을 위한 일체의 불법 찬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불법 찬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찬조 금품 및 향응을 강요받을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에 알리고 야구부 수익자부담금으로 납부 할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 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불법 찬조 금품 및 야구부 운영, 야구부 관리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학교 및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학생명 : (인)

학부모 : (인)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참고5 | **야구부 만족도 설문조사(지도교사, 감독, 코치)**

만족도 설문조사(지도교사, 감독, 코치)

소속 학교명 : 직위 : 성명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부패 방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등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해당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절차나 업무 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 지도자[감독, 코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선수 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3. 지도자[감독, 코치]는 학부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선수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4. 지도자[감독, 코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5. 지도자[감독, 코치]는 학부모에게 금품, 향응, 편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 지난 1년간 학부모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몇 번 받았습니까?
   ① 횟수( )회 ② 시기( )
7. 지도자[감독, 코치]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고 보답 ② 자녀 잘 봐 주기 ③ 기타( )
8. 지도자[감독, 코치]는 학부모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시 학교 운동부 관리 규정상 징계, 중도계약 해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9 지도자[감독, 코치]는 청렴하고 깨끗한 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부패근절[금품제공, 향응접대, 편의제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참고6 | **야구부 만족도 설문조사(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학부모)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부패 방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등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해당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절차나 업무 처리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 지도자(교사, 코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선수 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3. 지도자(교사, 코치)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선수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4. 지도자(교사, 코치)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5. 학교 관계자 및 지도자(교사, 코치)에게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 지난 1년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몇 번 제공했습니까?
   ① 횟수(　　)회　　② 시기(　　)
7. 지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수고 보답 ② 내 자녀 잘 봐 주기 ③ 기타(　　)
8. 학교운동부 관계자(학교장, 지도교사, 코치 등)로부터 설문시 잘 주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9. 지도자[감독,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시 학교 운동부 관리 규정상 징계, 중도계약 해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10. 학부모께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부패근절[금품제공, 향응접대, 편의제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참고7 | **야구부 만족도 설문조사(학생선수)**

만족도 설문조사(학생선수)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부패 방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등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해당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절차나 업무 처리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 지도자(교사, 코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선수 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3. 지도자(교사, 코치)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선수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4. 지도자(교사, 코치)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5. 야구부 관련 지도 교사나 야구부 지도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 선배 학생선수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7. 학교운동부 관계자(학교장, 지도교사, 코치 등)로부터 설문 시 잘 주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8. 지도자[감독,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시 학교 운동부 관리 규정상 징계, 중도계약 해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